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농축 27465-23	(전화: 750-8408)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3년	/om	
시행일자	'91. 2.		
보조기관	산업경제국장 전결 농축과장 가축위생계장		
기안책임자	이규학 (손홍락)	협조기관 법무담당관심사	법무실가 1991. 2. 21 42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발신명의 시 장	문서통제 인 인
제목	'91 가축전염병 검진사업 실시		
(제 1 안) 내부결재			
'91년도 우리시 가축방역 사업의 일환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것을 막기위하여 관내에서 기르			
는 젖소에 대하여 검진사업을 실시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안과 같이 고시하고 각안 시행코자 합니다.			
첨부 : 고시문 1매			
(제 2 안)			
수신 보건환경연구원장			
참조 축산물부장			

제 목 같은 건
'91년도 우리시 가축방역사업의 일환으로 고시문과 같이 검진사업을 실시키
로 하였으니 본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첨부 : 고시문 1부
(제 3 안)
수신 농림수산부장관
참조 가축위생과장
제 목 같은 건
'91년도 우리시 가축방역 사업의 일환으로 별첨 내용과 같이 가축 검진사업
실시를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 고시문 1부
(제 4 안)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산업과장
제 목 같은 건
'91년도 우리시 가축 방역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별첨 내용과 같이 가축

검진사업 실시를 고시하였으니 귀구 관내 젖소 사육축주에게 검진을 받도록 계도하

여 본 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람.

첨부 : 고시문 1부

수신처 : 중랑, 양천, 서초, 강남, 구로, 강동구청장

(제 5 안)

수신 서울특별시 수의사회장

제목 같은 건

'91년도 우리시 가축방역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별첨 내용과 같이 가축 검진

사업 실시를 고시하였기 알려드립니다.

첨부 : 고시문 1부

(제 6 안)

수신 공보관

발신 산업경제국장

제목 같은 건

'91년도 우리시 가축 방역사업 계획의 일환으로 가축 검진사업 실시를 위하여

별첨 내용과 내용을 고시하고자하니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홍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3부. 끝.

일	2/20
시	10:00
장소	2100
주최	2135
주최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 4/호

가축 감염사업 실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젖소에 대한 감염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동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1991. 2. 7.

서울특별시장

1. 목 적 : 가축전염병의 만연을 방지하고 축산업 발전 및 연수공동전염병 근절에 기여함
2. 지 역 : 서울특별시
3. 내 용 : 젖소의 결핵병 및 부루세라병 검진
4. 실시기간 : '91. 3. 4 - 11.30
5. 실시방법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가축방역관과 공수의에게 위탁 실시
6. 실시대상 : - 결핵병 : 젖소 1세이상 전두수
- 부루세라병 : 착유하는 젖소
7. 기타사항 : 검진결과 양성 및 위양성 젖소가 발생되었을때는 농림수산부 예규 제132호에 의거 조치.
8. 문의처 : 서울특별시 농축어업 (110-0400A)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150-5518)
서울특별시 강구초 산업과

관 련 법 규 별 칙

=====

0. 건축전염병 예방법 제5조(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의 실시) 1. 도지사는 건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의 소유자에게 건축에 대하여 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을 받을것을 명 할수 있으며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외 건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관리수의사를 두게 할수 있다.
0. 건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의 실시 명령)
1. 서울특별시,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에 대한 검사, 주사, 약육 또는 투약의 명령을 하거나 농림수산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축, 종계 및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사, 주사, 약육, 투약 또는 정기검사의 실시일 10일전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목적
 2. 지역
 3. 대상건축명과 질병의 종류
 4. 실시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